

大田直轄市正林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

議案 番 號	326
-----------	-----

提出年月日：93. 11.

提 出 者：大田直轄市長

1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正林2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目的으로 制定한 正林2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는 同 地區에 대한 事業이 '92.12.31 換地確定處分됨으로서 事業이 完了되어 廢止함.

2. 參考事項

- 事 業 名：正林2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
- 位 置：西區 正林洞 일원
- 面 積：320천 m²
- 施行期間：88. 7. 15. - 92. 12. 31
- 施 行 者：大田直轄市長

대전직할시 조례 제 호

대전직할시정립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폐지조례안

대전직할시정립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

부 칙

이 조례는 1994년 1월 1일 부터 시행한다

● 대전직할시정립2지구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조례

[1988. 9. 30
조례 제1668호]

제 1 조 (목적) 이 조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제32조의규정에 의하여 대전직할시가 시행할 정립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한다.

제 2 조 (명칭) 이 사업은 정립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(이하“구획정리사업”이라 한다)이라 칭한다.

제 3 조 (시행지구 및 면적) 사업시행 지구는 법 제32조 규정에 의거 인가된 대전직할시 서구 정립동, 가수원동 각일원 지역의 토지(320.388 제곱미터)를 대상으로 한다.

제 4 조 (사업의 범위) 이 사업은 대지로서의 효용증진을 위하여 토지의 교환, 부합, 지적,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, 공공시설의 설치변경 및 택지조성 사업과 이에 따른 공사의 시행(지장물 정리 포함)및 체비지의 관리처분, 기타 관계된 모든 사업으로 한다.

제 5 조 (사업기간) 이 사업은 1988. 7. 15 - 1991. 6. 30일까지 시행한다. 다만, 천재지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사업을 완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사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제 6 조 (비용의 부담) ① 이 구획정리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는 토지 소유자로부터 경비를 부과징수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부과 금액은 시행지구 내에 있는 토지의 위치, 지적, 토질 수리 이용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토지 또는 금전으로 부담하게 한다.

③ 이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체비지 매각 잠수입으로 충당함을 원칙으로 하고 법 제75조의 규정에 의한 수익자 부담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수익자부담금 징수에 관하여는 대전직할시 도시구획사업수익자 부담금 징수 조례에 준한다.

제 7 조 (환지면적의 기준) 환지 교부의 표준으로 할 종전토지 각 필지의 면적은 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인가공고일 현재의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(이하“지적공부”라 한다)에 의한다. 다만, 다음 각호에 의하여 따로 면적을 정할 때에는 그 면적에 의한다.

1. 인가공고일 이후에 분할 또는 합병한 것은 그 사유 발생일 현재 공부상의

지적

2.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실측 또는 기타 방법에 의하여 따로 정하였을 때의 면적
- 제 8 조 (토지등의 가격 평정) ①토지등의 가격의 평가는 법 제48조의2 및령 제30조의2 규정에 의한 2개 이상의 평가기관에서 평가한 금액을 토지평가협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이를 결정한다.
②전항이 평가는 지역내 토지 전필지와 전체 지장물건을 대상으로 한다.
- 제 9 조 (토지평가협회의 구성 및 심의) 토지평가협회의 구성 및 심의에 관하여는 대전직할시 토지구획정리사업 토지평가협회의 설치운영 규정에 의하되 정립2지구 토지구획정리사업추진위원장을 당연직 위원에 포함시킨다.
- 제 10 조 (환지계획) ① 본 지구의 환지방식은 평가식을 기준으로 하고 법 제48조내지 제51조 및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환지로서 교부할 면적은 환지구정에 의하며, 종전 토지 또는 이와 가까운 위치에 지정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인가일 현재 본인소유 토지는 없고 시장이 인정하는 주거용 건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(단 입주자는 제외)에 대하여는 협의에 의하여 일정한 면적의 체비지를 우선 분양할 수 있다.
③공공용지 및 체비지의 지정으로 종전 토지 위치에 환지를 지정할 수 없을 때에는 종전 토지 위치와 대등하다고 인정되는 위치로 비환지 지정할 수 있다.
- 제 11 조 (특별지 환지) ①종전토지의 지적이 건축법상 용도 지역별 1택지 기준 면적에 미달되는 토지는 금전으로 청산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권리면적이 건축법상 용도지역별 1택지 기준면적 미만의 토지에 대하여는 증환지 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공유지분으로 환지할 수 있다.
③ 동일인 소유의 2필지 이상의 토지를 합하여 기준면적 이상이 될 때에는 합병하여 환지할 수 있다.
④종전 지적이 광대한 토지는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감소하여 환지하고 금액으로 청산할 수 있다.
- 제 12 조 (환지처분) ① 환지처분은 공사가 완료된 후 행함을 원칙으로 한다.
② 환지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환지계획에 의한 사항을 공고하고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.
- 제 13 조 (환지처분에 대한 청산) ① 환지처분에 의하여 징수 또는 교부할 청산금액은 권리면적과 환지면적과의 차액에 청산시점의 평가가격을 곱한 금액

으로 한다.

② 환지처분에 의한 청산은 대전직할시 환지 청산금 취급 규칙에 의한다.

제 14 조 (토지의 관리) 시장이 환지 예정지를 지정하고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환지예정지를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소홀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이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.

제 15 조 (체비지 및 보류지등의 관리처분) 사업비에 충당될 체비지 및 보류지는 도시형성의 촉진과 공공시설의 유치를 위하여 집단적으로 책정할 수 있으며 시장은 이를 관리하고 그 토지의 관리 및 처분에 대하여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.

제 16 조 (체비지 및 공공용지 부담방법) 체비지 및 공공용지에 대한 토지의 각필지에 대한 부담면적은 사업시행이후 토지 면적의 평가가격을 기준으로 사업 계획에서 정하여 감보율에 의하여 이를 결정한다.

제 17 조 (공사비등 지불) ① 공사비는 현금으로 지불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체비지 매각의 부진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사업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체비로 현물 지급할 수 있다.

③공사비를 체비지로 현물 지급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직할시 토지구획정리 특별처분지매각 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시점에서 가격을 결정하여 지급한다.

제 18 조 (납부서 통지) 시장은 제13조 규정에 의한 징수금의 납부기한을 납부 의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
다만, 납부자 승계는 지방세법 제15조 내지 제16조에 준한다.

제 19 조 (환지예정지 사용) 법 제56조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토지소유자 및 임차권자(이하“토지소유자”라 한다)이 환지예정지를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.

제20조 (환지예정지 측량 등) ① 환지예정지의 권리자 또는 관계인으로부터 법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가 있는 후에 환지예정지에 대한 명시 측량 등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대전직할시 민원사무처리규정에 의거 시행하고 대전직할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 조례에 의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.

제21조 (대리인 선정 신고)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대전직할시내에 거주하지 않을 때에는 구획정리사업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대리하도록 시내에 거주 또는 주소를 둔 자를 대리인으로 선정하여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22 조 (소유권 이전신고)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환지처분전에 부동산 등기 법에 의한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하여 시장에 신고하여야 한다.

제 23 조 (법인신고) 구획정리사업 지구내 토지 소유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하여 대표자 주소, 성명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 또한 변경이 있을 때에도 같다.

제 24 조 (주소변경신고) 이 사업지구내 토지소유자가 주소 또는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5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하여야 한다. 대리인이 주소 또는 거주지를 변경하였을 때에도 또한 같다.

제 25 조 (신고의무 불이행시의 책임한계) 이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가 제21조내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생기는 제반 손해에 대하여는 시장은 일체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토지소유자는 이에 대한의의를 제기하지 못한다.

제 26 조 (등기) 시장은 사업기간중 환지에 대한 증명서 및 기타 제증명서등의 발급신청이 접수되면 발급하여야 한다.

제 27 조 (등기완료후의 통지) 시장은 법 제65조에 의한 촉탁 등기가 완료된 때에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등기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.

제 28 조 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 29 조 (추진협의회의위원회의 설치운영) ①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토지소유자의 권익을 최대한으로 보장케하고 지역실정에 알맞는 구획정리사업을 원활히 추진코져 추진협의회를 설치하여 지역내 토지소유자의 의견을 수렴 협의하여 시행자에게 협의 및 건의함을 목적으로 한다.

② 본 회의 위원은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내의 토지소유자중에서 8인을 토지소유자에 의하여 선출한다.

③ 본 회의에는 다음의 위원을 두어 제반업무를 추진 및 처리 등을 담당케 한다.

위 원 장 : 1인

부위원장 : 1인

총 무 : 1인

제 30 조 (회계에 관한 사항) 이 사업의 회계에 관하여는 대전직할시 토지구획

정리 사업비 특별회계설치 조례에 의한다.

부 칙 (조례 제1668호)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大田直轄市正林2地區土地區劃整理事業施行條例廢止條例案

審 查 報 告

1993. 12. 5

産業建設委員會

1. 審査經過

가. 提出日字 및 提出者 : 1993. 11. 8. 大田直轄市長

나. 回 附 日 字 : 1993. 11. 13

다. 上 程 日 字 : 第28回 大田直轄市 議會 定期會

第8次 産業建設委員會 (1993. 12. 15) 上程

質疑, 審査, 議決

2. 提案說明의 要旨

(提案說明者 : 都市計劃局長 李 秉 讚)

가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

正林2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目的으로 制定한 正林2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條例는 同 地區에 대한 事業이 '92. 12. 31. 換地確定處分되므로서 事業이 完了되어 廢止함.

나. 參考事項

- 事 業 名 : 正林2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
- 位 置 : 西區 正林洞 일원
- 面 積 : 320千m²
- 施行期間 : '88. 7. 15 ~ '92 12. 31
- 施 行 者 : 大田直轄市長

3.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

(專門委員 : 金 完 圭)

가. 提案理由 및 主要骨子 : 앞의 內容과 같음.

나. 檢討意見

- 正林 2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 施行 條例는 西區 正林洞 一圓의 土地區劃整理事業의 施行에 關하여 必要한 事項을 規定할 目的으로 1988. 9. 30. 制定하여 1991. 6. 30.까지 事業을 完了할 計劃이었으나
- 當該 地區 土地區劃整理事業이 1992. 12. 31. 換地 確定 處分하여 事業이 完了되어 條例를 廢止코자 하는 事案으로 原案대로 議決함이 加할 것으로 思料됨.

4. 質疑 및 答辯要旨

없 음

5. 討 論 要 旨

없 음

6. 小委員會 審查內容

없 음

7. 少數 意見의 要旨

없 음

8. 審 查 結 果

原 案 可 決

9. 其他 必要한 事項

없 음